

## ▣ 研究報告書 ▣

# 石油類 價格制度의 分析

이 資料는 최근 韓國動力資源研究所가 出판한 「石油 및 가스産業의 經濟分析」에 관한 研究報告書中 油價制度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編輯者 註〉

## I. 石油製品 價格推移

### 1. 石油價格이 經濟에 미치는 영향

현재 우리나라의 總一次能源需要 중 약 60%를 石油로 충당하고 있어 석유가격上이國內 物價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또한 石油를 全量輸入에 의존하고 있고 國內의 유일한 대체에너지源인 石炭資源의 매장량도 보잘것 없기 때문에 石油波動의 충격을吸收 또는 排除하기가 힘든 事件속에 있다.

國際原油價 상승에 따른 國내 油價引上은 電氣, 交通料金 및 각종 工產品價格등에 즉각적인 引上波及效果를 일으키게 되고 이더한 物價의 상승은 對外競爭力의 弱화를 빚어 輸出鈍化를 낳아 수출의 頓도가 큰 國내經濟의 萎縮을 招來하게 된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3년에 14.9%의 高度成長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는 73年末의 石油波動에 따른 國内油類價의 暴騰으로 인해 74년에는 8.0%, 75년에는 7.1%로 成長率이 둔화되었다.

石油輸入代價도 70년에 FOB기준으로 9천 6백만 달러이던 것이 74

油波動 직후인 74년에 10억 달러로 10倍이상 증가하였고 78년에 20억 달러, 79년에 31억 5천만 달러 80년에는 物量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54억 2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總輸入額 중 原油導入費가 차지하는 비중도 73년의 6.5%에서 80년에는 24.7%에 이르고 있어 國際收支上의 커다란 变数로 작용하고 있다.

### 2. 石油製品의 價格引上推移

石油類價格의 引上은 國民생활과 產業界에 미치는 영향이至大하므로 정부는 석유류가격을 公共料金化하여 그 가격을 規制하

여 왔다. 國내의 石油類價格引上은 換率 및 物價上昇에 따른 精油會社의 일정 收益率保障이란 점도 작용하고 있으나, 所要原油의 전량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產油국의 公示原油價格의 인상과 步調를 같이하여 왔다. 73년까지는 國제적 으로 原油價格이 3달러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석유제품에 대한 시장가격은 最高告示價格 이하의 수준에서 需給變動에 따른 부분적인 변화만을 보였으나 73年末 中東戰 이후 產油국의 石油武器化정책으로 배럴당 3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國際原油公示價格이 12달러 수준으로 무려

〈表-1〉 第1次 및 2次 石油波動의 影響

區分	年度	'73	第1次石油波動		'78	第2次石油波動	
			'74	'75		'79	'80
サ우디A-L公示價 (\$/Bbl FOB年 末基準)		5.04	10.46	11.51	12.70	24.00	32.00
原油導入單價 (\$/Bbl (FOB))		2.45	8.99	10.54	12.27	17.00	29.65
原油導入費 (總輸入額에 대한 比重) (億弗 (FOB) (%))		2.5 (6.5)	10.1 (15.7)	12.4 (18.6)	20.4 (14.1)	31.5 (16.5)	54.2 (24.7)
実質成長率 (% (年平均))		14.9	8.0	7.1	11.6	6.4	△5.7
消費者物價上昇率 (% (年平均))		3.2	24.3	25.3	14.4	18.3	28.7
貿易收支 (億弗)		△5.6	△19.3	△16.7	△17.8	△43.9	△46.6

資料：動資部, 經濟企劃院

〈表-2〉 石油類価格 引上日誌 (1970年~1981年12月 現在)

日 字	引上率(%)	備 考
1970. 3. 17	13. 0	換率引上、物価上昇
1971. 6. 2	19. 5	原油価格引上
8. 20	21. 0	換率引上 및 原油輸送費引上
1972. 7. 21	14. 1	換率引上 및 原油価格引上 (2.4\$/Bbl)
19. 8. 8	13. 0	原油価格引上 (3.0\$/Bbl)
12. 4	30. 0	原油価格引上 (4.257\$/Bbl)
1974. 2. 1	82. 0	原油価格引上 (9.619\$/Bbl)
4. 8	22. 3	原油価格引上 (10.210\$/Bbl)
10. 7	7~50	石炭供給制限、燈油의 石油類稅免稅
12. 7	34. 0	換率引上 및 原油価格引上 (11.053\$/Bbl)
1975. 11. 21	8. 8	原油価格引上 (12.067\$/Bbl)
1977. 5. 20	4. 3	原油価格引上 (12.495\$/Bbl)
7. 1	-	附加価値税調整
1978. 1. 28	3. 67	77年 7.1日字 原油価格引上에 따른 均衡維持
1979. 3. 7	9. 5	原油価格引上 年平均10% 分期別引上
7. 10	59. 0	原油価格引上
1980. 1. 29	59. 43	換率引上 및 原油価格引上 (基準価格 28.8\$/Bbl)
8. 24	14. 72	" (基準価格 30.58\$/Bbl)
11. 19	12. 56	" (基準価格 31.97\$/Bbl)
1981. 4. 19	15. 0	" (基準価格 31.44\$/Bbl)
11. 29	6. 0	" (基準価格 31.92\$/Bbl)

註 1) 基準原油価下落은 平均複合単価 基準에서 低価原油導入社의 原油価基準으로 變更適用되며에 기인함.

2) 引上率은 稅前工場渡価格基準임.

資料：動力資源部, 韓國産業銀行

4배가까이 인상되자(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73년 12월 30%引上을 시초로 하여 74년 2월에 82%, 4월에 22.3%, 12월에 34.0%씩 引上조정되어 국내物價上昇을 主導하였다.

그후 國際原油市場이 균형상태를 되찾음에 따라 국내석유류가격도 安定勢를 보였다. 그러나 78年末의 이란事態로 起起된 제2차 석유파동으로 原油価는 다시 急騰하게 되고 국내석유가격도 대폭 引上 조정되었다.

국내 石油類가격引上은 國際原油価引上과 換率上昇이 主要因이지만 기타 여러가지 生産費用의 상승, 諸稅公課의 신설및 폐지, 精油工場가동율의 上昇및 기타価格政策 变動時에도 가격조정이 실

시되고 있다.

## II. 石油価格制度 의 分析

### 1. 価格體系

우리나라의 石油製品価格은 石油事業法에 의거하여 価格決定権을 갖고 있는 政府에 의해 결정되어 製品段階別 최고가격이 告示되고 있다. 石油事業法 第15條 ①項에 의하면 “動力資源部長官은 石油의 판매가격이 부당하게 昂騰하거나 下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石油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石油精製業者, 石油輸出入業者 또

는 石油판매가격의 最高額 또는 最低額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第②項에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가격의 最高額 또는 最低額을 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석유제품의 価格은 製品別 段階別로 告示되고 있다. 이중 段階別価格은 工場渡価格, 精油会社販売価格, 代理店価格, 注油所価格으로 구분된다.

精油会社판매가격과 工場渡価格의 차이는 輸送費에 있으며 기타가격은 流通마진을 포함하는 것 이 다르다. 수송비는 43個告示地域에 한해서 수송거리와는 관계없이 定額으로 표시되어 있다. 정유회사는 위의 製品에 대하여 위의 적용지역에서는 購買者로부터 별도의 수송비를 徵收할 수 없으며, 〈表-3〉 적용지역에서의 製品引渡地点의 우선순위는 精油工場, 貯油所, 埠頭, 駅頭로 되어 있다.

보통회발유의 경우 稅前工場渡価格은 1272.78원인데 여기에 特別消費稅 130%와 附加価値稅 10%가 加算되어 稅後工場渡価格은 690.13원이 된다. 여기에 수송비를 합하면 精油会社販売価格인 699.97원이 된다. 수송비는 稅前輸送費 3.89원과 이에 대한 130%의 特別消費稅, 그리고 부가 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다. 代理店 수수료는 15.83원의 마진과 이에 대한 附加価値稅로 구성되어서 代理店판매가격은 717.38원이 된다. 여기에다 20.56원의 마진과 이에 대한 附加価値稅로 구성된 注油所수수료를 加算하면, 注油所판매가격인 740원이 결정된다. 이와같이 普通揮發油의 경우 소비자가격에서 稅金이 차지하는 비중은 57.7%가 된다.

〈表-3〉 精油会社의 全国均一 輸送費

(单位: 원/ℓ)

油種別	輸送費	適用地域
揮發油	9.84	서울, 仁川, 水原, 原州, 江陵, 春川
燈油	5.89	목호, 황지, 清州, 忠州, 提川
低硫黃경유 (0.4%)	6.29	天安, 大田, 洪城, 舒川, 오천
輕油	6.29	群山, 全州, 裡里, 井邑, 南原
서유황B-C油 (1.6%)	5.89	신태안, 木浦, 麗水, 順川, 康津
輕質重油	5.89	榮山浦, 光州, 法聖浦, 三千浦
서유황B-C油 (2.5%)	5.89	忠州, 馬山, 晋州, 釜山, 蔚山
重油	5.89	浦項, 大邱, 安東, 店村, 金泉
B-C油	5.89	榮州, 濟州, 溫山
제트油	5.89	
나프타	-	
溶剤	-	
아스팔트	-	
프로판(일반용) (원/kg)	35.37	
부탄(일반용) (원/kg)	34.50	

資料: 総務處「官報」, 1981. 11. 30

〈表-4〉 工場渡複合単価의 決定 (81. 11. 29施行)

区分	金額	原価構成比 (%)
I. 原油代関聯費用	30,489원/B	92.8
1. 原油費	41,07\$/B	87.9
(1) 基準原油価	32.92 "	
(2) 安定基金	2.30 "	
(3) 備蓄基金	1.50 "	
(4) 運賃等基他	4.35 "	
2. 換率	690원/\$	
II. 原貨表示原油価	28,337원/B	
III. 原油導入金融費	2,152원/B	4.9
IV. 精製費	2,366원/B	7.2
計	32,855 B	100

資料: 動資部 2,366 690원/\$

〈表-5〉 精油会社別 原油導入価格

(单位: \$/Bbl, FOB基準)

社別 年度	油公	湖油	京仁	雙竈	極東	全體
'78	12.26	12.37	12.14	-	11.25	12.26
'79	17.32	16.69	17.48	-	14.17	17.00
'80	31.34	27.37	30.76	34.25	26.01	29.65
'81.9	34.55	31.55	34.24	36.51	29.01	33.50

資料: 動資部, 石油協会

## 2. 價格決定方式

석유류제품의 工場渡価格은 각 정유회사가 도입하는原油費와도 입한原油를 精製하여 판매하기 까지의 비용인 生産費로 구성되어 정부가 最高販売価格을 결정하고 있다. 原油費와 精製費의 책정은 정부의 石油価格政策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81年11月29日 油価調整時에 책정된 工場渡複合單価의 대역은 下表의 (表-4)와 같다.

## 가. 原油費

原油費는 각 정유회사가 도입하는 F.O.B. 原油価, 原油輸送費, 기타 附帶費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원유가 석유제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석유제품 가격은 原油価에 의해 左右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품가격形成에 큰比重을 차지하는 原油価는 基準原油価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현재 基準原油価는 低価로 도입한 정유회사의 平均单価로 책정되고 있으며, 高価導入原油에 대한 差額은 定額安定基金에서 补填하여 原油価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基準原油価를 設定, 原油価를 平準화하는 이유는 원유도 입가격이 회사마다 다르고 原油費를 어느 회사의 수준에 맞추느냐에 따라 社別利益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별 原油導入価格을 살펴보면 原油의 質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合作先인 CALTEX를 통하여 所要原油 전량을 사우디로부터 公示価로 공급받고 있는 湖南精油는 쿠웨이트產이나 이란產原油를 매입하는 他정유회사보다 싸게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原油価를 평준화하는 制度가 필요

하게 되며 이의 制度的 變化는 安定基金制度의 운영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나. 精製費 및 利潤

정재비는 原油를 石油製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製品製造費用과 輸送貯油하는 費用, 一般管理費 및 販売費, 그리고 営業外費用이 포함되는 總經費를 말한다. 製造費用, 一般管理費 및 販売費에 속하는 주요비용은 労務費, 水道光熱費, 減價償却費, 修繕費, 保險料, 電力費, 間接稅 및 公課金 등이다. 輸送貯油費는 정유공장에서 貯油所까지의 製品수송비와 貯油에 필요한 비용인데 会社에 따라서는 이를 一般管理費 및 販売費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営業外費用은 금융비용이 大宗으로서 支給利子와 社債利子 및 外換差損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 石油와 같이 単位去來規模가 큰 상품의 利子나 換리스크는 정유회사에 대하여 資金圧迫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격결정節次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 精製費用의 결정이다. 이것은 精製費의 예측을 필요로 하는데 두말할 필요도 없이 費用을 높게 예측할 경우 製品價格은 더욱 引上된다. 정부의 價格行政을 볼 것 같으면 精製費用을 예측한다기 보다는 一定率의 인상을 依定하여 그 引上率만큼 製品価格로 費用転嫁를 허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81年4月19日의 가격조정이 있기전까지는 石油類價格을 抑制하기 위해 精製費를 동결하거나 또는 精製費가 가장 낮은 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非現実的으로 정제비를反映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유회사의 缺損이 발생하게 되고 이 缺损은 基金에서 补填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下에서는 정부가 일일이 정유회사의 損益을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뿐만아

니라 政府가 판정한 損益에 대하여 精油会社는 항상 不滿을 표명하였고 또한 일부 국민들은 精油会社의 缺损을 基金으로 补填해 주는데 대하여 雜音과 疑惑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정부는 81年4月19日 價格調整時에 精製費를 精油 5社의 決算結果에 나타난 精製費実績을加重平均하여 산정함으로써 基準精製費는 모든 정유회사의 平均費用을 반영하게 되었다. 또한 精製費를 現実화하는 대신 安定基金에서 缺损을 补填하는 제도는 지양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精製費의 반영을 과거의 最低 1個社 기준에서 脱皮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精製費用을 발생시킬 소지가 많은 新設精油工場, 拡張工場, 或은 가동율이 현저히 낮은 工場 등에 대한 配慮와 生産性 향상등 유리한 Low Cost工場에 대한 利潤動機를 賦与하여 平衡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 당시에 반영된 總精製費의 구성을 살펴보면 순수한 製造経費는 15.87%에 불과하고 輸送貯油費가 16.22%, 一般管理費가 7.02%, 유전스利子가 31.38% 유전스換差損 및 기타비용이 나머지 28.51%로서 유전스關係費用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費用要素는 管理限界 외에 존재하므로 한企業의 능력으로서는 조절하기 힘들다는 것을 注視할 필요가 있다.

基準精製費의 現実化는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정유회사들은 과거와 같이 金融間接費用을 石油事業基金에 의존하지 않고 운영効率性 提高를 통해 적절한 보수를 享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당시 油価調整의 획기적 变革의 하나는 利潤概念의 公認이라 할 수 있다. 그간에는 精油企業이 私企業에 의해 영위되고 있지만 公益의 성격이 강하다

는 이유로, 製品原価를 결정한다음 油公精油部門의 利潤을 '零으로 만드는 선, 소위 損益分岐點(Break-Even Point)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精油業에는 利潤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도는 價格政策 대행을 위한 하나의 行政的 방편일 수는 있어도 經濟原理에 바탕을 둔合理的施策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競争的 상태에서의 시장가격은 投資資本의 機会費用에 해당하는 額數의 利潤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利潤이 허용되지 않고 損失도 있을 수 없으므로 經營合理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油価調整時 자기자본이익률 稅後 15% 以内的 利潤水準을 인정하게 되었다. 대신에 精油会社에 適正水準이상의 過多利益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국가정책상 필요한 備蓄이나 公害防止를 위한 脱黃施設 등 精油部門에만 再投資하도록 用途를 제한하였다.

價格策定에 있어서 利潤이 公개적으로考慮되었다는 것은 石油價格政策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利潤의 考慮가 반드시 消費者價格의 追加引上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아무리 損益分岐點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投資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回收하려는 것이 投資者の 의도이기 때문에 利潤概念의 도입은 지금까지 默示的으로 取得하던 利潤을 表面化 顯在化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利潤을公開的으로 考慮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市場經濟의 일면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 3. 安定基金制度의 運營

#### 가. 安定基金制度의 意義 및

### 法的 根拠

現行価格制度의 근본적 특징은 精油会社間 利潤 혹은 損失의 차 이를 缩少시키려는 政策의 意志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原価中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原油価格이 多元化되어 있어 그 質에 따른 合理的인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価格決定權을 갖고 있는 정부가 國內導入최고가격을 기준으로 価格을 결정하면 低価原油導入社에게 暴利를 허용하고 油価의 過多引上을 초래하게 되며 그 반대로 低価原油導入을 기준할 경우 高価原油導入会社의 稼動中止로 国家 전체적으로 보아 物量需給上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각 정유회사의 原価中 최소한 원유가격에 있어서만은 精油会社別로 차이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 安定基金制度이다.

이와 같은 趣旨의 안정기금은 石油事業法과 同法의 시행을 위한 石油事業法施行令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基金의 管理運用에 대해서는 韓國石油開發公社의 石油事業基金 管理運用規程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安定基金이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석유사업법 第17條의 2에 명시된 石油事業基金制度의 設立趣旨는 “石油의 需給 및 価格安定과 石油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基金의 財源은 第17條 3에 ① 石油輸入 또는 石油製品販売時에 石油輸入業者 또는 石油精製者로부터 징수하는 収入金, ② 國際原油価格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国내 石油精製業者가 취득한 差等利潤 중에서 징수하는 収入金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 基金의 용도는 ① 石油의 備蓄 및 저장시설 ② 석유개발사업 ③ 原油의 差等価格과 石油製品価格의 평준화로 인하여 石

油精製業者에게 발생한 損失의 补填 ④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에너지資源開發事業으로 국한되어 있다. 또한 石油事業法 시행령 第9條의 4 “収入金의 徵收比率 및 징수방법”에 의하면 石油事業基金을 징수할 때 그 사용목적에 따라 石油備蓄事業 추진을 위한 財源確保를 위해서 備蓄基金을 징수하고 国内油價의 안정판리를 위해 安定基金을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安定基金의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석유사업법상 安定基金의 설치근거가 마련된 것은 1977年末이었으나, 본격적으로 運用되기 시작한 것은 1979年 7月10日 이후부터이다. 安定基金은 다른 基金과는 달리 어떤 目標額을 정해 놓고 積立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徵收·補填이 이루어지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81年 10月末 現在 安定基金의 운용현황은 (表-6)과 같다.

### 나. 安定基金制度와 原油価의 平準화

① 原油価平準化 問題의 발생; 78年末 이란事態에 의해 야기된 제2차 石油波動이 전만 해도 原油価는 어느정도 質에 따른 합리적인 価格構造를 보여주고 있었다. 原油価의 差等은 質의 차이에 起因하는 것으로서 比重이 낮고 硫黃의 함유량이 적을수록 良質의 原油로 인정되어 그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輕質原油를 경제했을 때 挥發油, 나프타, 輕油등 市場価値가 다른 제품보다 높은 제품의 取率이 높아지기 때문에 輕質原油의 가격은 重質原油보다 높게 마련이었다. 硫黃含有量이 적은 原油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消費各國의 環境保全政策때문이며 硫黃含有量이 적을 경우 脱黃施設에 대한 投資의 필요성이減少되므로 原油의 상대적 価値는 증가하게 된다.

原油価平準화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란事態 이후 原油質의 차이를 반영하는 価格體系가 붕괴된 데서 기인한다. 즉, 이란事態로 야기된 原油市場의 일시적 不均衡狀態를 利潤極大의 절

〈表-6〉 安定基金収支現況

(81. 10. 31 통관물량기준)

(单位 : 100万원)

통관月別	80년이월	徵 收	基準価差 換差損	補填			殘額 %
				장려금	기타지원	小計	
80. 12	25,815	1,952	15,268			15,268	12,499
81. 1		18,710	27,614			27,614	3,595
2		16,498	20,078			20,078	15
3		21,723	58,165	18,528	47,030	28,624	152,347 △ 130,609
4		17,692	39,478			39,478	△ 152,395
5		34,427	32,252			32,252	△ 150,220
6		29,930	23,356			23,356	△ 143,646
7		32,095	31,448			31,448	△ 142,999
8		29,980	34,607			34,607	△ 147,626
9		30,867	23,483			28,483	△ 140,242
10		32,872	30,429			30,429	△ 136,306
81. 1~10	예치이자	1,493					
計	25,815	268,239	336,178	18,528	47,030	28,624	430,360 △ 136,306

資料 : 石油協會報, 1981. 12

호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는 강경파産油国들이原油의 質에 상관없이各自任意의 價格을 결정 판매함으로써 原油價의 多元化現象을 초래한데서 비롯된다.

## ②原油價平準化制度의 施行;

政府는 79年부터 原油費 平準화政策를 실시하여 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79년의 경우 導入原油中 最高價原油에 引上豫想分을 추가한 금액을 基準原油費로 책정한 후 이것과 実導入原油價와의 差額을 通閏時 石油事業基金으로 징수하였다. 이 基金이 消尽될 때까지 国内製品價格을 同一水準에서 유지케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나 이와 같은 平準化방법은 基準原油費를 実導入價以上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製品價格의 폭등을 초래하고는 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80年 政府는 기준원유비의 定義를 總導入原油의 平均複合單價로 변경하였다. 原油費平準化資金은 각 精油会社가 通關時 납부하는 배럴당一定額의 石油事業基金과 平均複合單價以下로 도입하는 정유회사로부터 그 差額을 징수하는 石油事業基金으로造成되었다. 정부의 방침은 低

價原油의 도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었으나 石油事業基金의 精算時期, 方法 등 節次上の 문제로 差額基金의 징수와 인센티브의 부여는 運營上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참고로 80年度 安定基金 운용실적은 〈表-7〉과 같다.

정부는 81年 4月19日 석유가격조정시 原油費平準化 방법을 또 다시 变更, 低價原油導入社(湖南精油)의 平均導入價를 基準原油費로 책정하였으며 平準化資金의 조성은 差額基金制度를 폐지하고 定額基金으로 징수키로 하였다. 배럴당 3.50달라로 책정된 定額基金은 原油의 国내平均複合單價와 基準原油價와의 差額을 반영

하고 있다. 이것은 곧 石油事業基金의 용도를 原油費平準化라는 한가지 목적에만 한정시켰음을 의미한다.

## ③OPEC原油價单一化에 따른制度의 改編問題;

78年末 이란事態로 비롯된 제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世界의 經濟는 크게 위축되었으며 石油多消費国家의 石油需要를 대폭감소시켰다. 또한 先進國을 비롯한 석유소비국들은 두번에 걸친 쓰라린 經驗에 비추어 石油消費節約를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油類代替에너지 開發에 박차를 가함으로서 需要是 더욱 減退되었다. 더우기 이러한 原油에 대한 세계적인 需要萎縮에도 불구하고

〈表-7〉 80年 安定基金運用実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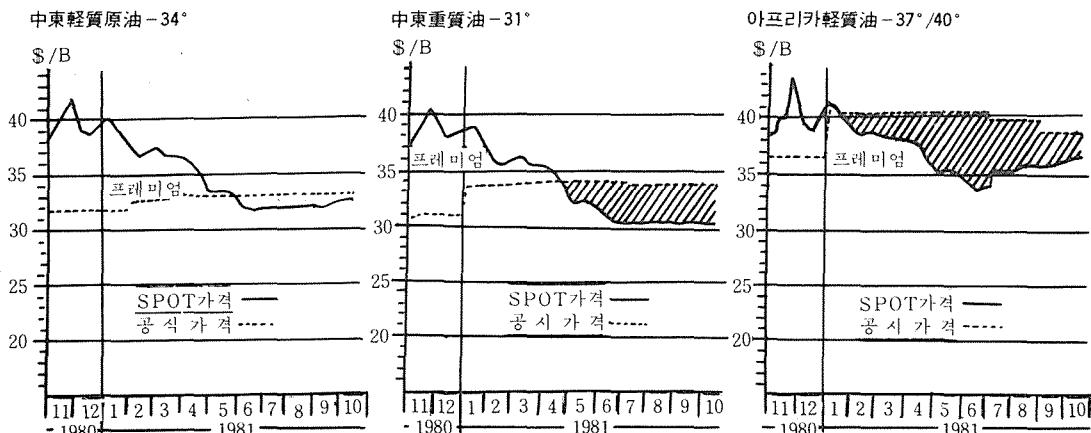
(单位: 億원)

徵 収	補 填	過不足
• 80年徵收 : 1,668 (定額 \$ 1 ~ 1.50/Bbl 및 低價差額)	• 高價差額 補填 : 1,920 • 其他各種 補填 : 1,617	△ 955 *
• 79年移越 : 705	計 : 3,537	
• 運用収益 : 209		
計 : 2,582		

資料：動資部

\* 基他 各種補填中 未支給分으로 81年에 移越

〈그림-1〉 現物市場에서의 原油價格变动 推移



資料 : PIW

〈表-8〉 OPEC平均公式価値変化推移<sup>1)</sup>  
(単位: ドル/バレル, %)

年 度	公 式 価	増 加 率
77.	12.88	-
78.	12.93	3.88
79.	18.67	44.39
80.	30.87	65.35
81. 1	34.80	12.73
81. 2	34.85	0.14
81. 3	34.87	0.06
81. 4	34.74	△ 0.37
81. 5	34.61	△ 0.38
81. 6	34.56	△ 0.14
81. 7	34.18	△ 1.11
81. 8	34.00	△ 0.53

註 1) : OPEC産油量基準 加重平均

資料 : Energy User's Report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강경파 産油国の 高原油価政策을 막기 위해 1,050萬B/D수준까지 増産을 단행함으로써 世界原油市場은 81年初부터 供給過剩상태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供給過剩으로 해서 81年 上半期中 高原油価를 주장하던 일부 강경파 産油国들도 自國産原油의 販売不振으로 原油価를 引下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表-8〉과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 3月 이후 OPEC 평균 原油公式価는 계속 下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現物市場価格도 公式価格을 下廻하였다.

이러한 原油의 供給過剩化와 가격의 引下傾向下에서 产油国들은 原油供給파악상태를 해소하고 原油価의 単一化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81년5月에 OPEC總会를 개최하였다. 이 總会에서 OPEC는 최대产油국인 사우디의 減産을 통한 需給安定을 꾀하였으나 単一価格策定에 대한 강경파 产油국과 온건파 产油국의 意見相衝으로 결렬되었으며 그 후 多元化體制가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 81年10月29日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第61次 OPEC特別會議에서 OPEC 13個國은 드디어 油価单一化에 합의한 바 있다.

하루만에 閉幕声明을 내고 閉会된 동회의에서 OPEC會員国들은 당면하고 있는 市場与件을 검토한 뒤 市場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創出해내기 위해서는 OPEC 油価를 单一化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아라비안·라이트 原油를 기준으로 삼은 OPEC의 公式基準油価를 34\$/B로 책정하였다. 그리고 기타 OPEC原油의 가격에 대해서는 油質과 지리

적 위치에 따라 합리적인 價格差異를 두되 最高限度를 38\$/B 까지 허용하며 이 가격을 82年末 까지凍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原油價格의 변동을 위한 発効日時は 원칙적으로 81年11月 1日부터 하되 다만 引上되는 原油의 경우에는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PEC會員国들은 위와같은 모든 결정이 現石油市場의 체제를 통해 世界經濟에 명백하고도肯定的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OPEC를 世界石油市場의 主要供給源으로서의 위치를 지속시킴으로써 OPEC의 결속을 도모시킬 것으로 확신하였다.

〈表-9〉 OPEC原油価单一化意後의 原油価変動内駆

(単位: \$/Bbl)

产 油 国	油 种 别	從前価格	調整価格 <sup>1)</sup>	調 整 幅
中 東				
사우디아라비아	34°Arabian Light	32.00	34.00	+2.00
	27°Arabian Heavy	31.00	31.50	+0.50
	31°Arabian Medium	31.45	33.00	+1.55
이 란	34°Iranian Light	37.00	34.60	-2.40
	31°Iranian Heavy	36.00	33.40	-2.60
이 라 크	36°Kirkouk(Ceyhan)	34.93	35.11	+0.18
쿠 웨 이 트	31°Kuwait	35.50	33.00	-2.50
아 부 다 비	40°Zakum	36.46	35.60	-0.86
카 타 르	36°Marine	37.23	35.50	-1.73
아프리카				
알 제 리	44°Sahara	40.00	37.50	-2.50
리 비 아	36°Amna	39.20	36.80	-2.40
	37°Es-Sider	39.68	37.28	-2.40
나이지리아	31°Forcados	34.32	36.32	+2.00
	26°Bonny Medium	33.22	35.22	+2.00
Caribbean				
에 콰 도 르	30°Oriente	30.90	33.15	+1.25
베네수엘라	26°Tia Juana 102	33.06	33.06	-
	34°Oficina	38.06	37.06	-1.00
極 東				
인도네 시아	34°Minas	35.00	35.00	-
	42°Attaka	37.55	37.55	-

註 1) 調整価格 施行日字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981. 10. 1, 베네수엘라가 1981. 11. 7, 기타 다른 OPEC국가들은 1981. 11. 1부터임.

다. 이러한 원유값单一化에 관한 합의에 따라 원유값調整이 확인된 產油국의 원유값變動內訣은 (表-9)와 같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61次 OPEC會議結果 OPEC는 원유값单一化에 합의를 하였지만 이것이 언제쯤 완전定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소의문이 있다. 質의 差異에 대한 합리적인 價格體系의 定着化도 어려운 문제이며, 각산유국의 利害가 상충하여 定着化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할지도 疑問이다.

원유값 평준화제도는 원유가가 多元化되어 있는前提下에서 이를 人為의으로 평준화하는 제도 이므로 원유값이单一化될 경우 油值管理制度는 기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事件變化에 발맞추어 政府도 지난 81年11月29일의 油值調整時 油值管理制度를 일부 개편, 油值单一化가 완전히 定着될 때까지는 精油社들의 低值導入에 따른 인센티브와 高值導入에 따른 페널티를 동시에 총족시키는 暫定制度를 적용해 나가겠다는 方針을 세웠다. 즉, 이전까지 人為의으로 평준화시켰던 단일가격제도를 二元化시켜, 과거에는 원유도입가격이 비싸거나 싸거나 관계없이 高值差額을 全額補填해 주었으나 이후로는 원유를 비싸게 도입하는 회사에 대해 高值差額과 平均導入価格과의 差額中 30%를 高值導入에 따른 罰課金으로 부여하는 반면 番값으로 원유를 들여오는 會社에는 安定基金中 일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低值導入을 유도하고 高值導入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는 国内油類價格을 낮추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앞으로 각국의 원유값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원유값의单一化가 완전定着될

〈表-10〉 石油類價格 引上時期 및 引上率(77~81)

引上時期	77	77	79		80			81	
	引上率	5.20	1.28	3.7	7.10	1.29	8.24	11.19	4.19
引上率(%) (稅前工 場渡)	4.3	3.67	9.5	59.0 <sup>b</sup>	59.43 <sup>b</sup>	14.72	12.56	15.0	6.0
						⟨12.6⟩	⟨11.6⟩	⟨13.9⟩	⟨5.7⟩

註 1) 事前豫測引上分包含(21.0%~18.9%)

⟨ ⟩ 内는 消費者 價格 引上率

경우에는 원유값平準化制度는 废止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石油製品價格의 引上方式

우리 나라 石油類價格의 引上方式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일정 기간동안凍結해 놓았다가 一拳에 대폭인상하고 引上된 수준에서 다시 얼마간 동결했다가 다시 一拳에 대폭 올리는 段階式引上方式을 취해왔다. 石油類價格 上向 조정의 主要因은 원유값引上과 換率引上이기 때문에 원유값의 引上頻度가 많지 않았던 과거의 市場環境과 固定換率制度下에서는 이러한 段階式引上은 合理의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석유류 가격 引上方式下에서는 정부가 引上率 및 인상시기에 직접干与하게 되므로 国내石油需要 사정에 따라 引上時期 및 引上率을 임의로 조정 가능하다는 長점이 있다. 그러나 원유값이 거의 每分期마다 인상되고 있는 현재의 国際原油市場環境과 80年1月12日부터 채택된 变動換率制下에서는 이러한 引上方式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게 된다. 즉, 제품가격이 凍結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유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될 때까지 損失이 累積되게 되고 이 누적된 損失이 새 가격에 転嫁되게 되므로 製品價의 인상폭이 원유값의 引上幅보다 크게 된다. 또한 제품가격이 凍結

되어 있으므로 換率의 지속적 引上은 換差損을 발생케 하며, 정부가 각 정유회사의 損益을 檢証하고 適正引上率을 결정해야 하는 難點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引上時期와 引上幅에 대한 불안감은 經濟全般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며, 製品價引上時期가 必要 이상으로 지연되어 一拳에大幅引上될 때 인플레率의 증가에 이로 인한 경제적 損失을 소비자에게 강요케 되며 일시적으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衝擊을 주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價格體制로 인한 국민경제의 衝擊을 줄이기 위해 80年8月24日 油值調整時 석유가격 連動制를 채택키로 하였다. 石油價格 連動制란 국내石油價格을 產油국의 원유값引上, 換率變動 및 기타 引上要因에 連動시켜 그때 그때 조정하는 방법이다. 政府는 5%의 變動要因이 있을 때마다 製品價를 즉각 上向調整하여 누적된 引上要因에 따라 한꺼번에 油值를 調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시켜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겨울철 盛需期에는 소비자의 負担을 덜기 위해 이制度의 實시를 보류하고 있다. 石油價格 連動制가 매우 합리적인 제도임을勘案할 때 이의 과감한 施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製品別 相對價格構造 現行 우리 나라의 石油製品別

가격인상方法은 제품가격의 全體的 引上率을 결정한 후 既存의 製品別 價格에 그 引上率을 一律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製品別 價格을 결정告示하고 있다. 따라서 製品間의 상대적 價格體系는 石油價의 引上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되며 시장에서의 製品別 需給動向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原油價의 인상에 따라 製品價가 引上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製品別 引上率이同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價格體制下에 있는 우리 나라의 製品別 가격구조를 國際的価格類型과 비교하여 보면 〈表-11〉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挥發油의 가격은 높은 稅率로 인

하여 가장 비싼 편이며, 重質油의 가격은 國際價格水準을 上廻하고 있고 輕質油의 가격은 國際水準을 下廻하고 있다. 最近에 들어 油價調整時에 國내 油價體系를 國際價格構造에 적근시키려는 노력으로 하여 重質油와 輕質油의 價格隔差가 다소 확대되고는 있지만 주로 產業用燃料로 사용되고 있는 重質油인 B-C油의 가격이 相對적으로 높다는 것은 國際競爭力を 弱化시키는 한 要因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重質燃料油가격은 外國水準에 비해 아직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石油價格의 上向調整은 輕質油製品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별 價格體系

가 이러한 方向으로 변화되어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수년내에 필요하게 될 重質油分解裝置에 대한 投資가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重質油분해장치의 설치는 石油需要의 輕質化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原油確保와 導入先多刃化를 보다 융통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中東產油국들은 原油의 직접수출을 줄이는 대신에 石油製品, 특히 需要가 적은 重質製品을 原油에 끼워서 強壳하려는 戰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원유확보를 위해서는 輸入重質製품을 國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原油導入先을 多刃化하다 보면 그 主要對象이 重質原油가 된다. 이것은 地下에 남아 있는 石油資源이 輕質油보다는 重質原油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導入先의 多刃化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重質油分解裝置의 설치는 必須의이다.

최근들어 低硫黃油의 가격이 신설되었는데 公害發生者負担原則에 의거 低硫黃油의 가격은 비싸게 策定되어 있다. 公害防止費用의 일부가 소비자가격에 轉嫁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이것은 公害防止를 위한 社會的費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現行 우리 나라의 나프타價格과 B-C油價格을 热量基準으로 비교하여 보면 〈表-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프타의 價格이 高硫黃 B-C油價格보다는 높은 편이나, 低硫黃B-C油(1.6%, 2.5%)보다는 오히려 低廉하거나 비슷해서 나프타가 產業用 연료로 歪曲 사용되고 있다.

합리적 價格體系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相對的 價格體系가 적절해야만 일시적 需給不均衡을

〈表-11〉 主要國의 石油類價格比較

	高級揮發油		輕油		重油		
	消費者價格	稅額	消費者價格	稅額	消費者價格	稅額	
<u>아메리카</u>							
美 国	56.28	5.04	47.88	...	30.50	...	(0.64)
아르헨티나	110.46	66.78	66.36	30.24	25.45	1.04	(0.38)
<u>유럽</u>							
프랑스	125.58	68.88	62.58	14.28	35.29	0	(0.56)
西 独	102.06	46.62	54.18	7.56	34.33	1.13	(0.63)
이탈리아	141.96	91.98	50.4	10.92	35.98	4.85	(0.71)
英 国	105.84	51.66	52.08	2.94	36.01	2.92	(0.69)
스페인	130.62	42.84	57.12	1.68	36.04	0.08	(0.63)
<u>아시아</u>							
台 湾	93.24	...	55.86	...	34.99	...	(0.63)
韓 国	212.94	118.86	51.24	6.72	42.85	3.62	(0.84)

註 : ① 1981年 1月基準임

② 各國의 首都 價格임 단 美国은 国内平均價格

③ …는 알 수 없음.

資料 : PIW 12. 28. 1981

〈表-12〉 热量을 基準으로한 나프타 B-C油 價格比較

区 分	나프타	低硫黃B-C 油(1.6%)	低硫黃B-C 油(2.5%)	B-C油
精油会社販売價格(원/ℓ)	175.74	225.75	217.34	203.32
熱 量(Kcal/l)	8,000	9,900	9,900	9,900
熱 量 / 價 格	45.52	43.85	45.55	48.69

打開기 위한 제품의 输入도 원활 할 것이며 제품간의 需給蹉跌 같은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II. 石油類価格 과 税問題

### 1. 現行税制

石油類製品의 최종 消費者價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油種別 税率은 정부의 石油需給政策과 税收目標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 이의 구체적인 事例는 과거 우리 나라 石油政策의 흐름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61년 12월에 石油類稅를 物品稅로 독립시키면서 挥發油稅를 300%로 引上, 輕油稅를 20%로 引下策定한 것은 당시 挥發油 偏重의 消費構造를 개선하고 車輛의 디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 이었으며, 다시 64년 7月에는 輕油需要가 挥發油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아진 奇現象을 개선하기 위하여 挥發油稅를 100%로 引下한바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도 에너지節約 및 石油類需給을 위해 挥發油 및 輕油에는 特別消費稅가 부과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石油에 관련, 부과되는 税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關 稅

原油 및 石油製品의 输入時に 부과되는 税로서原油에 대해서는 基本税率이 5%로 되어 있으나 현재 임정적으로 非課稅되고 있다.

#### 나) 附加價値稅

77年부터 石油類全製品에 공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附加價値稅의 税率은 10%로 되어 있다.

#### 다) 特別消費稅

石油製品에 대한 特別소비세는 현재 挥發油와 輕油만이 課稅對象이 되고 있으며 税率은 挥發油가 130% (基準稅率 160%), 輕油가 7% (基本稅率 10%)로 되어 있다. 挥發油 및 輕油에 대한 特別소비세는 政策的으로 그 税率이 자주 변경되어 왔다.

### 2. 現行税制의 特徵 및 外國과의 比較

현행 우리 나라의 石油類稅는 從價稅로 되어 있어 油価가 引上될수록 税收는 加速的으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으며 國家經濟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他部門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附加價値稅나 防衛稅를 제외하면 特別消費稅의 課稅品目과 그 税率이 특징적이다.

石油類제품중 挥發油와 輕油에만 特別소비세가 賦課되고 있으며 換發油에는 매우 높은 税率이 적용되고 있는데, 日本과 台灣의 石油類稅制 및 税率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日本의 경우 石油關聯稅金으로는 關稅이외에도 가솔린稅, 輕油去來稅, 石油ガス稅, 航空機燃料稅 및 78年6月1日부터 새로 시행된 原油 및 输入石油製品에 대한 石油稅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定額稅이며 税收의 用途가 특정화 된 目的稅이다. 石油類製品中 B-C油에는 石油消費稅가 賦課되지 않고 있으며 燃油와 輕油의 税率이 비교적 높은것이 特徵이다.

석유산업이 國營인 CPI (中國石油公司)에 의해 전담되고 있는 台灣의 경우, 石油類에 대한 세금은 物品稅만이 부과되고 있으며 기타 税金, 基金 등이 일체없

〈表-13〉 挥發油 및 輕油에 대한 特別消費稅率 推移

区分	70~73	74~76	77~80
揮發油	200	300	160
輕油	40	40	10

註：大統領令으로 輕油는 80年8月 24일부터 7%, 挥發油는 80年 11月 19일부터 130%임.

〈表-14〉 石油類稅比較

国別	稅 制	稅 率	消費者價格中稅金이 차지하는比率 (%)			
			揮發油	燈油	輕油	B-C油
韓國	從 價 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特別消費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挥發油 : 130%</li> <li>• 輕油 : 7%</li> </ul> </li> <li>○ 附加價値稅 : 10%</li> <li>○ 防衛稅 : CIF의 2.5%</li> </ul>	57.5	9.1	14.5	9.1
日本	從 量 稅 一部目的稅制採擇 (道路整備等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挥發油稅 (휘발유, 나프타, 燈油) 41.66 \$/B (8,555 ¥/B)</li> <li>○ 輕油去來稅 18.82 \$/B (3,863 ¥/B)</li> </ul>	35.2	61.3	4.1	-
台灣	從 價 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石油類 物品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揮發油 : 13.7%</li> <li>燈油 : 8.04%</li> <li>輕油 : 13.03%</li> <li>B-C : 3.08%</li> </ul> </li> </ul>	13.7	8.0	13.0	3.1

資料：石油協會報 1981年 9月

는 것이 특징인데 物品稅는 他國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挪發油稅와 B-C油稅率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

### 3. 現行稅制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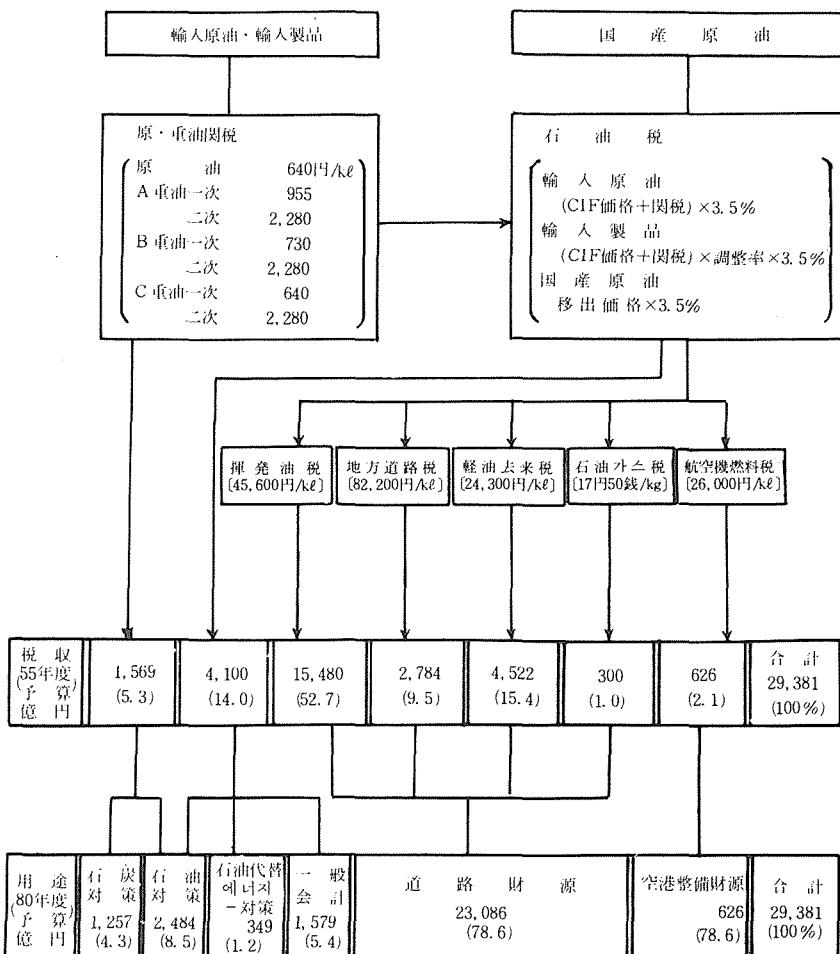
현재 挪發油 및 輕油에 부과되고 있는 高率의 特別소비세는 油類의 소비가 價格에 대하여 적어도 短期의으로는 매우 非彈力의 이라는 측면에만 너무 집착된 稅政策이며 유독 輸送·交通部門

의 投入財인 이 두가지 油類製品에만 차별적인 稅金이 부과되는 데에 대한 根據가 薄弱하고 이러한 차별적인 세금으로 인해 油價引上이 있을 때마다 挪發油·輕油와 다른 石油類와의 價格隔差는 계속 벌어지게 된다. 特別消費稅의 부과가 油類消費 절약을 위한 것이라면 石油類의 대부분이 生產部門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節約의 여지도 生產部門에 더 많은 것임을 감안할 때 挪發油에만 부과될 것이 아니며 또한 挪發油價格

의 결정은 國내自動車產業의 육성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挪發油 및 輕油에 대한 特別消費稅가 政府稅入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特別消費稅의 急激한 引下나 廢止는 財政에 막대한 壓迫을 加하게 된다는 데에 또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상적인 租稅란 공정해야 하며, 公共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해야 하고 효율적인 資源分配를 이루는 경제적 要請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稅制의

〈表-15〉 日本의 石油關係諸稅 및 그 稅收와 用途(1980年度 予算)



資料：日本石油通信社, 石油產業의 現狀(1980)

개선은 消費者價格의 지나친 上昇抑制와 함께 다른 石油類에 比한 稅制衡平의 문제, 그리고 財政收入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租稅政策方向은 석유가격의 引上이 있을 경우마다 稅金이 부담을 줄여 나감으로써 소비자가 겪는 上昇率을 생산자 上昇率보다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特別消費稅率을 낮추어 나가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현재의 從價稅를 從量稅로 전환하여 현재의 수준인 ①當高級揮發油509원, 普通揮發油 354원 輕油14원으로 조정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短期的으로 政府稅入減少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는 石油価格引上이 있을 때마다 稅率引下와 같은 效果를 주며 長期的으로는 실질적인 稅負担이 稅率引下의 정도보다 크게減少하게 될 것이다.

## IV. 日本과 台灣 의 価格政策

### 1. 日本의 価格政策

#### 가. 油価体系

〈1〉 日本石油産業法 第15條, 판매가격의 標準額에 관한 규정을 보면 “① 通商産業長官은 石油製品価格이 부당하게 昂騰하거나 下落할 우려가 있을 때는 石油의 安定의이며 低廉한 공급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石油製品의 生産費나 輸入価格을 기준으로 하여 石油製品의 國際価格과 그외의 경제 사정을 參酌하여,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輸入業者の 石油製品 판매가격의 標準額을 정할 수 있다. ② 通商産業長官은 前項의 규정에의한 標準額을 정할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고 되

어 있다. 本條項은 석유제품의 価格에 관해서는 석유업자의 企業努力과 公正한 경쟁에 의해서自主的으로 형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標準価格을 정하고 石油業者が 자발적으로 尊重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標準額의 算定方法은 석유정제업자의 성격에 관해서는 石油製品의 生産費를, 石油輸入業者の 가격에 관해서는 石油製品의 輸入価格을 기준으로 하여 石油製品의 國際価格 기타 諸般 경제사정을 參酌한 후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日本의 通産省은 최근에, 1978年 石油危機로 인해 야기되는 市場混亂을 이용 石油業者들의 부당한 利益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最高都壳 価格制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서 ① 日本의 石油製品 価格構造는 最高価格制로 인해 國際価格에 비해 燃油 価格은 터무니 없이 低廉한 반면, 나프타 및

B-C油 가격은 오히려 비싸며, 특히 美國 및 유럽諸국과의 석유제품가격문제에 대한 구조적均衡을喪失했다는 점, ② 現制度上으로 정유사들에게 重質原油의 分解設備에 필요한 投資를 유도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③ OPEC의 최근 油価单一化로 원유가격의暴騰原因이 除去되었으며 油価가 안정回復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 ④ 長期需給展望을 반영한 特수한 석유제품 価格構造는 원칙적으로 市場에 카니즘上 사라져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3〉 石油類稅는 대부분 定額稅이며 稅收의 용도가 특정화된 目的의 稅이고 石油製品中 B-C油에는 石油消費稅가 부과되지 않으며 燃油과 輕油의 稅率이 비교적 높게 정책되어 있다.

#### 나.) 油価調整 方法

原油 価格引上時마다 가격제품에 그때 그때 반영하며 종래의 価格抑制政策을 포기하고 価格現実化

〈表-16〉 石油製品都壳物価指數의 推移

(1975年平均 = 100)

年度	石油製品平均	揮發油	나프타	체트油	燃料油	輕油	A重油	B重油	C重油
65	39.5	45.3	23.3	41.7	42.6	36.3	35.1	33.4	32.9
66	38.9	45.3	23.3	40.7	38.2	34.5	34.6	32.8	32.2
67	39.0	45.1	23.3	40.5	38.3	32.5	34.3	31.8	32.4
68	39.6	45.7	23.5	40.2	37.3	32.4	35.1	32.0	32.6
69	37.8	45.7	23.6	40.9	34.9	31.9	32.4	29.8	29.9
70	37.9	46.5	23.9	43.7	41.2	32.4	32.3	30.4	30.5
71	43.0	49.1	24.0	46.9	46.8	36.2	36.7	36.2	36.3
72	42.5	50.0	24.9	48.3	43.4	36.4	36.4	36.6	36.2
73	45.5	54.7	29.3	50.9	47.3	40.7	40.4	39.5	38.6
74	81.6	87.2	76.1	82.7	66.0	79.5	79.5	78.1	78.5
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6	109.1	107.4	111.8	114.4	114.3	108.5	107.7	119.5	109.5
77	111.6	111.6	114.3	121.5	116.9	109.2	107.6	128.9	111.6
78	101.6	102.7	101.2	117.1	103.8	96.1	96.8	122.3	101.9
79	120.7	122.1	124.1	134.2	128.0	118.9	122.1	157.6	111.7

資料：日本銀行統計局, 石油産業의 現況

를 통하여 石油物量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다.) 石油政策上 特徵

〈1〉多數의 精油企業이 존재하여 競爭市場의 성격이 強하다.

〈2〉80年 下半期부터 圓貨価値上昇으로 인해 國際原油価의 引上에도 불구하고 石油製品価가 下落 내지는 安定勢를 보여 油価安定 유지에 寄与했다.

〈3〉石油물량 확보와 產油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消費地精製原則을 포기하고 国内需要가 큰 燈油, 軽油, 輕質重油 등 中間석유제품의 輸入을 확대할 方針中에 있다.

## 2. 台湾의 油価政策

#### 가.) 油価體系

〈1〉석유산업을 国家安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산업으로 看做하여 国營인 中国石油公司(CPC)가 石油産業을 전담, 原油導入, 精製, 天然ガス油田開発, 石油化學 및 그 流通過程까지 모두 지배함으로써 石油에 관한 한 完全統制管理體制이다.

〈2〉全油種의 工場渡価格, 消費者価格 모두가 정부에 의하여单一最高価格으로 책정, 告示되고 있다.

〈3〉石油製品間 相對価格은 B-C油価格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 나.) 油価調整方法

原油価引上의 製品価転稼時期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다. 物価安定과 國제경쟁력의 유지를 위하여 引上幅을 최소화하여 引上時期도 半年정도 늦추거나 또는 일부제품만의 가격을 引上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価格調整은 CPC의 부담을加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만 CPC가 石油関聯의 모든 부문에 참고하고 있고 財務構造가 비교적 툳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政府의 補助로서 亦

字를 補填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다.

#### 다.) 石油政策上 特徵

〈1〉國營 CPC에 의해 모든 石油事業이 複合經營되고 있어 정부의 油価管理가 간단하므로 國際原油価引上의 國내파급을 最少化할 수 있고 物量不足 등의 사태에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

〈2〉국내경제가 인플레이션의 壓迫을 받고 있고 油価를 上向調整해야 할 때는 일반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捸發油, 燈油, 軽油 등의 가격인상을 당분간 保留 또는小幅引上하고 燃料油만 인상시키는 정책을 취한다.

〈3〉石油類稅는 物品稅만을 부과하고 있고 기타 稅金, 基金 등이一切 없으며 物品稅는 他國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捊發油稅와 B-C油稅率이 낮다.

## V. 現行石油制度의 問題点 및 改善方案

현재 우리 나라의 石油価格制度는 石油事業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가격을 統制하는 最高価格制度를 채택하고 있는데 최고가격은 基準原油価에 정유사의加重平均精製費를 합쳐서 算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費用実績에 근거한 精油費의 算定은 長期的限界精油費用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에너지使用에 있어서 資源配分을 歪曲시킬 우려가 있으며 費用節減의 필요성을 鈍化시킨다. 価格은 어느정도 市場機能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바람직하다. 石油類価格도 市場原則에 의거 限界供給者の 平均生產費에 일치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市場에서의 需要와 供給에 의해 資源配分이 이루워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

때 平均生產費는 適正利潤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정기금제도는 多元化된 原油價格과 각 정유회사별로 상이한 精製費 水準 및 예측 불가능한 費用發生要因 등을 정부가 劃一的으로 告示함으로써 각 정유사의 실제 費用金額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시키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安定基金制度가 國際原油價格의 多元化가 수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2차 석유파동을 극복하는 한 方便이 되기는 하였지만 많은 문제점을 露出し켰다. 安定基金을 조성하여 高価原油導入社의 高価差額을 补填함은 低価原油導入社의 불만을 야기시켰고 이는 私企業競爭原理에도 치된다. 특히 최근처럼 供給過剩이 존재하는 原油市場條件下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하다. 또한 安定基金으로 精油会社의 缺損을 补填해 주는 데에는 정부가 精油会社가 損益을 직접 分析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일반국민들의 理解도 곤란할뿐만 아니라 經營合理화의 필요성을 감퇴시킨다. 価格의 単一化가 완전히 定着되지 않을 경우에는 原油費가 정유회사 原価中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原油価平準化制度의 基本趣旨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安定基金制度가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安定基金을 정유회사의 損益調整手段으로 사용하여, 缺損이 크게 발생한 精油会社에 대해 (表-17)에서처럼 갖가지 名目의 損失補填하는 일은 止揚하고 使用用途를 엄격히 제한하여 정유회사의 經營合理화努力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向後 原油価의 単一化가 완전定着될 경우에는 原油価平準化를 위한 安定基金制度를 폐지하고 原

## □ 研究報告 □

油価를 정유회사의 自律決定에 말김으로써 国内石油製品価格의 自律化를 위한 基礎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석유제품별 価格體系는 우리나라의 製品別 需要特性을 반영해야 하며 국제가격구조와도 크게 相異해서는 안된다. 不合理한 석유제품별 가격체계는 油種間의 需給問題를 야기시키고 산업구조까지 強曲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석유류가격은 個別 製品価格이一律的으로 引上되고 있어 重質油의 가격은 국제価格水準을 上廻하고 있고 輕質油의 가격은 국제価格水準을 下廻하고 있다. 따라서 輕質油와 重質油間의 가격차이를 겸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重質油需要가 감소하고 輕質油需要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처하고原油確保와 導入先多邊化를 보다融通性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重質原油의 크래킹施設 및 脱黃施設을 위한 財源確保가 될 수 있도록 가격구조가 誘導되어야 한다. 현행 価格統制方式로 全 製品에 대한 価格統制보다는 나프타, B-C油等 주요제품에 대해서 価格統制를 행하고, 他製

価格는 告白制로 하여 부분적 自律화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原油에서 생산된 製品이라 할지라도 価格引上率은 弹力性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즉, 価格彈力性이 큰 제품은 작은 제품에 비해서 価格引上率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B-C油의 価格彈力性은 비교적 높다. 왜냐하면 B-C油는 石炭이 産業用燃料로 경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B-C油 価格策定時에는 石炭価를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石油製品価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石油類稅도 현재의 従稅稅에서 従量稅로 轉換하여 稅收入의 急激한 減少 없이도 消費者에게 실질적인 価格引下效果를 줄 수 있도록 개선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価格運動制는 합리적인 制度이므로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一定率以上(5~10%)의 变동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価格를 現実化함으로써 価格引上의 累積에 따른 衝擊을 緩和하고 国際에너지環境의 변화에 무리없이 적응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石油価格의 自律化가 行政指導

體制로부터 民間主導型 經濟體制로 轉換하는 계기가 되고 經濟運用의 效率화를 위하여 漸進的으로 市場經濟原理에 대한 業界의 適應力を 배양하며, 석유제품가격의 自律的 連動化로 価格의 一時的大幅引上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価格自律化 문제が 정유회사간에 舉論되고 있지만 供給能力이 한정되어 있고 각企業別原価에 差異가 클 때 価格自律化를 시행하면 価格의 昂騰, 流通의 混亂 및 각종 不公正去來行為를 초래하게 되므로 精油社의 경쟁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現行制度의 補完을 강구하면서 가격을 규제하는 制度的 装置를 구비하는 등의 충분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消費者価格形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輸送 및 流通部門에서의 經濟性提高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精油와 流通의 従의 series化, 流通段階別 市場構造 및 行態 등에 대한 綜合的 analysis를 통해서 流通部門의 경제적 현황을 파악하고 經濟的 効率性 提高를 위한 구체적인 方案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

〈表-17〉 安定基金에 依한 精油会社補填実績(79~80)

(单位: 億원)

区分	社別	油公	湖油	京仁	雙竈	極東	計
'79年	(1) 上半期原油価差額	75	-	2	-	-	77
	(2) SPOT原油導入損失	-	9	34	-	-	43
	(3) 製品導入損失	40	35	17	-	-	92
	(4) 低価油原인센티브	-	136	-	-	-	136
	(5) 輸送費差額	-	-	51	-	-	51
	(6) 原油質差異基準 価格調整	-	-	-	-	8	8
	計	115	180	104	-	8	407
'80年	(1) USANCE換差損(90日分)	277	228	47	40	13	605
	(2) 低価原油인센티브	-	630	-	-	-	630
	(3) 新設精油社 支援	-	-	-	256	-	256
	(4) 原油導入先多邊化支援(輸送費差額)	-	-	7	-	-	7
	(5) 備蓄施設促進	-	-	-	11	13	24
	(6) 原油質差異基準 価格調整	18	-	17	46	14	95
	計	295	858	71	353	40	1,617.

資料：石油協会報 1981年9月 註：原油高価差額 補填除外